

Archives



노벨평화상 수상자

劉曉波



Outcome Document of the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f September 2005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작가로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劉曉波. 그는 80년대에 이미 그의 과격한 중국 전통문화 비판으로 문단의 이단아로 알려졌으며, 1989년의 천안문 사건 때 '반혁명선전선동죄'로 체포된바 있었으며, 2008년12월에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零八憲章'을 기초하여 인터넷상에 전파함으로써 다시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구속돼, 1년 후에 징역11년의 판결을 받고 현재도 遼寧省 錦州市에 있는 錦州감옥에 구금 중에 있다. (형기만료는 2020년)

류는 1980년대 중반, 문학평론가 李沢厚에 대한 비판으로 중국 문단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으며, 1989년 중국에서 민주화운동이 발발하자, 콜럼비아대학 객원연구원으로 체제중이던 미국에서 급거 귀국, 운동에 몸을 던져, 6·4천안문사건 직전, 다른 지식인 3명(侯德健, 高新, 周舵)과 같이 학생들의 단식투쟁에 참가했다. 인민해방군이 천안문광장에 돌입하기 직전, 4명은 학생들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라고 군과 교섭 '사군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사건 후 '반혁명죄'로 투옥되었다.

그는 2008년 「世界人權宣言」 발표 60주년을 계기로 발표된 중국의 대폭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08헌장'의 기초자가 되면서 다시 구속되면서 전화, 인터넷 교신마저 차단되었다. 2010년2월에 「국가정권전복선동죄」(中華人民共和國刑法 第105條)에 의해 징역11년 및 정치적 권리박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그는 네번째로 투옥되게 되고 현재도 錦州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다양한 집필활동을 통해 1천여 편의 작품을 남기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가 2008년에 기초자로 참여한 '零八憲章'과, '나의 자기변명', '나에게는 적이 없다-나의 최종진술' 등 3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1, 전언

올해는 중국입헌 100주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민주의 벽' 탄생 30주년이며, 중국정부의 '국민의 권리와 정치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조인 10주년이 되는 해다. 오랫동안 인권 탄압과 굴절에 대한 항쟁을 경험하면서 눈을 뜬 중국 국민들은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인류공유의 보편적 가치이며, 민주, 공화, 헌정이 근대정치의 기본적 제도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편적 가치와 기본적 정치제도를 이탈한 '근대화'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 인간성을 타락시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재앙의 과정이다. 21세기의 중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의 권위적 통치아래서의 '근대화'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가치를 지지, 주류문명에 들어가 민주적 정치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19세기 중반, 중국은 역사적 대변동에 내몰렸다. 전통적 전제제도의 쇠퇴가 분명해 지고, 중화의 대지에서 '수 천년 역사에 없던 대 변혁'의 막이 열렸다. 양무운동은 기계레벨의 개량을 요구했으나, 청일전쟁의 패배에 의해, 체제의 시대 지체가 다시 나타났다. 무술변법은 제도레벨의 혁신에 착수했으나, 보수파의 냉혹한 탄압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신해혁명은 표면적으로는 2000년 이상 계속된 황제 권력제도를 매장, 아시아에서 최초의 공화국을 건국했다. 그러나 내외외환의 역사적 상황으로, 공화정체는 잠깐만에 끝나고, 전제제도가 곧 권토중래했다. 기계의 모방과 제도쇄신의 실패를 거쳐, 중국인들은 문화적 병원의 성찰에 까지 사고를 심화, '과학과 민주'를 기치로 하는 '5.4' 신문화운동이 발생시켰다. 그러나 내전이 계속되고, 외적의 침략을 받음으로써, 중국 정치의 민주화 프로세스는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중국은 헌정의 프로세스를 재개했으나, 국공내전의 결과, 중국은 근대적 전제주의의 심연에 빠지고 말았다. 1949년에 성립한 '신 중국'은 명목상으로는 '인민공화국'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천하'였다. 집권당이 모든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을 독점, 반우파 투쟁, 대 약진, 문화대혁명, 64천안문 사건, 민간 종교활동 탄압, 권리보호운동 탄압 등 일련의 인권의 재난을 만들어 냈다. 수천 만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국민과 국가는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20세기 후반, '개혁개방'이 시작됐다. 중국은 모택동시대의 전면적인 빈곤상태, 절대적인 전체주의를 탈피, 민중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공민사회가 성장을 시작,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민간의 소리가 나날이 증대됐다. 그리고 집권자도, 시장화와 사유화로 향한 경제개혁을 행함과 동시에, 인권을 거절한 자세를 차차 변화시켜, 인권의 승인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1997년과 1998년에 두 개의 중요한 국제적 인권조약에 조인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04년에 헌법을 개정, '인권의 존중과 보장'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올해는 특히 '국가인권 행동 계획'을 제정하고 실행할 것을 승낙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정치적 진보는 지금까지는 여전히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법률은 있으나 법치가 없고, 헌법은 있으나 헌정은 없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누구의 눈에도 확연히 보이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집권 집단은 권위적인 통치를 견지하고, 정치변혁을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관계는 부패, 법치는 확립되기 어렵고, 인권은 보이지 않고, 도덕을 잃어버리고, 사회는 양극화, 경제발전이 기형적으로 되고,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모두는 파괴되고, 공민의 자유, 재산 및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장을 얻을 수 없었다. 다양한 사회적 모순이 누적, 불만의 감정을 높아져갔다. 특히 관과 민의 대립이 격화, 집단적인 사건이 빈발했다. 파멸적인 대혼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제 몰락 후에는 개혁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2, 우리들의 기본적 이념

중국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역사적 순간에서, 100년여의 근대화 과정을 성찰, 다음과 같은 기본적 이념을 다시한번 표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

자유는 보편적가치의 핵심이다. 언론,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이동, 스트라이크, 데모 등의 권리는 자유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자유가 번영치 않으면, 현대문명은 그 가치가 없다.

〈인권〉

인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인권의 보장은 정부의 제일의 목표이며 공공권력의 합법성의 기초이며, 동시에 '사람을 본위로 한다.'는 것의 내재적인 요소이다. 중국에서 과거에 반복된 정치적인 재앙은 어느 것

이나 집권당국의 인권 무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국가의 주체는 사람이다. 국가는 인민에 봉사, 정부는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평등〉

모든 개체는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 경제 상황, 민족, 피부색, 종교, 정치적 신념에 불구하고, 그 인격, 존엄, 자유는 모두 평등하다. 법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의 원칙을 실현, 공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 평등의 원칙을 실현치 않으면 안 된다.

〈공화〉

공화란 '모두가 다 같이 통치, 평화롭게 공생하는 것'이다. 분권에 의해 억제와 균형을 기하고, 이익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익집단, 많은 사회집단, 다원적인 문화 그룹이나 신앙 그룹들이, 평등한 참가, 공평한 경쟁, 공동의 정치의론을 기초로 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무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민주〉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주권재민과 민중의 선거에 의한 정부다. 민주주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정권의 합법성은 인민에 근거한다. 정치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2, 정치 통치는 인민의 선택으로 이뤄진다. 3, 공민은 진정한 선거권을 가진다. 각급 정부의 주요한 행정관은 정기적인 선거에 의해 선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4, 다수의 결정을 존중, 동시에 소수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한다. 간단히 말하면, 민주란 정부를 '민이 가지고, 민이 다스리고, 민이 향유하는' 근대적인 기관으로 하는 것이다.

〈헌정〉

헌정이란 법률의 규정과 법치에 의해, 헌법에 정해진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원칙을 보장, 정부의 권력과 행동의 범위를 한정, 확정, 그것에 부합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 황제적 권력의 왕조시대는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봐도, 권위주의적인 체제는 종언을 맞이하고 있다. 공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명군'이 아닌 '청렴한 관리'에 의존하는 신민의식을 버리고, 권리를 본위로 참여의 책임감을 가진 공민의 사기를 발양, 자유를 실천하고, 민주를 실천하며, 법치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길이다.

3, 우리들의 기본적인 주장

이상을 포함하여, 우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적인 공민정신에 근거, 국가의 정치제도, 공민의 권리, 사회발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 주장을 제기한다.

1, 헌법개정

전술한 가치관 및 이념에 근거, 헌법을 개정한다. 현행 헌법가운데, 주권재민의 원칙에 부합치 않는 조문을 삭제, 헌법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의 보증서, 공공권력의 허가서로, 어떤 개인, 단체, 당파이든 위반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최고의 법률로 한다. 그것으로 중국의 민주화의 법적인 근거를 정한다.

2, 분권에 의한 억제와 균형

분권에 의해 억제와 균형을 이루는 근대적 정부를 만들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보장한다. 행정의 범위를 결정, 정부를 책임지우는 원칙을 확립, 행정 권력의 과대한 팽창을 예방, 정부는 납세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사이에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확립한다. 중앙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수권되어야 하고, 지방이 충분히 자치를 행해야 한다.

3, 입법의 민주화

각 급 입법기관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입법에서의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견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4, 사법의 독립

사법은 당파를 초월한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하며, 사법의 독립을 실현하여, 사법의 공정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설립, 위헌 심사제도를 만들어, 헌법의 권위를 지킨다. 국가의 법치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각급 중국공산정법위원회를 가능한 한 빨리 철폐, 공공제도의 사적인 유용을 없애야 한다.

5, 공정한 공공제도

군대를 국가의 것으로 한다. 군인은 헌법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정당조직은 군대에서 떠나, 군대의 직업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

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 채용에서의 당파 차별을 해소, 당파에 구애되지 않고 평등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6, 인권보장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 최고 임의기관 직속의 인권위원회를 설립, 정부에 의한 공권의 혼란이나 인권의 침범을 방지한다. 특히 공민의 인신의 자유를 보장, 어떤 사람도 불법적인 체포, 구금, 소환, 심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한다.

7, 공직선거

민주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집행, 1인 1표의 평등한 선거권을 실현한다. 각급 행정수장의 직접선거를 제도로서 점차적으로 진척시켜야 한다. 정기적인 자유경쟁선거와 법정의 공직에의 공민의 입후보의 권리는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8, 도시와 농촌의 평등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호적제도를 폐지, 공민일률 평등의 헌법의 권리를 실현, 공민의 자유스러운 이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9, 결사의 자유

공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현행의 심사 허가 제도를, 届出制로 변경한다. 결당의 금지를 없애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의 행위를 규정, 일당이 집권을 독점하는 특권을 폐지, 정당 활동에서의 자유와 공평한 경쟁원칙을 구축,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협제화를 실현한다.

10, 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 시위, 데모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기보적인 자유다. 집권 당 및 정부의 불법적인 간섭이나 헌법에 위반한 통제는 행해서는 안 된다.

11, 언론자유

언론자유, 출판자유, 학술의 자유를 실현, 공민들의 알 권리와 감독할 권리를 보장한다. '신문법'과 '출판법'을 제정, 보도의 자유를 인정시킨다. 현행 '형법'의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를 폐지, 언론에 의한 죄를 철폐한다.

12,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교분리를 실행, 종교의 신앙 활동에의 정부 간섭을 없앤다.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 혹은 박탈하고 있는 행정법규, 행정조례 및 지방법규를 재검토하고 철폐한다. 행정이 입법으로 종교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종교단체(종교 활동의 장소를 포함)은 등기하지 않으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사전허가제도를 폐지, 어떤 심사도 필요로 하지 않은 제출제로 변화시킨다.

13, 공민교육

일당 통치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 색채가 농후한 정치교육과 정치시험을 그만두고,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주로 하는 공민교육을 확대, 국민의식을 확립, 사회에 봉사할 국민의 미덕을 제창한다.

14, 재산 보호

사유재산의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제도를 실행, 창업의 자유를 보장, 행정에 의한 독점을 없앤다. 최고인민기관 직속의 국유재산관리위원회를 설립, 창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정에 의한 독점을 없앤다. 최고민의회기관 직속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설립, 법에 따른 질서를 세워 재산소유권의 개혁을 행하고, 재산소유권의 귀속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한다. 신토지 운동을 전개, 토지의 사유화를 진척, 공민 특히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15, 재정 세제 개혁

민주적 재정을 확립,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권력과 직책을 명확히 한 공공재정제도의 구축과, 운용 메카니즘을 만들어, 각급 정부에서의 합리적이고 유효한 재정분리시스템을 만든다. 조세제도에 대한 대개혁을 행하고, 세율을 내려, 세제를 간소화하고, 세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 사회적 선택이나 민의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문 임의로 증세를 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설계하지 못하게 한다. 재산소유권의 개혁을 통해, 다양한 시장의 주체와 경제 메카니즘을 도입, 금융참여의 문턱을 낮춰, 민간금융의 발전의 조건을 갖추고, 금융시스템에 충분한 활력을 발휘시킨다.

16, 사회보장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제를 정비, 국민들이 교육, 의료, 연금, 취직 등의 방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7, 환경보호

생태환경을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창, 자손 및 전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국가 및 각급공무원이 그를 위해 지지 않으면 안될 각각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한다. 민간조직에 환경보호활동에의 참여와 감독 기능을 발휘시킨다.

18, 연방공화

평등, 공정한 태도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의 유지에 참여,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나타낸다. 홍콩, 마카오의 자유제도를 지킨다. 자유민주의 전제 아래, 평등한 교섭과 쌍방향의 협력에 의해, 해협양안의 화해를 추구한다. 원대한 지혜에 의해 각 민족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도와 제도설계를 탐구, 민주적 헌정의 구조아래 중화연방공화국을 만든다.

19, 정의의 변화

과거에 반복된 정치운동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은 인사 및 가족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 국가배상을 준다. 모든 정치범 및 양심수를 석방, 신앙을 위해 죄를 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석방한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분명하게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의를 확대한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사회의 화해를 추구한다.

4, 결어

중국은 세계의 대국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일원이다. 인권이사회의 멤버이다. 인류의 평화사업과 인권의 진보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세계의 모든 대국들 가운데, 중국만이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 아래 놓여있다. 더욱 그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인권의 탄압과 사회적 위기를 계속시키고 있으며, 중화 민족의 발전을 속박, 인류문명의 진보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민주화의 변혁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의 이유로부터, 우리들은 용기를 가지고 실행할 공민정권에 기초, ‘零八宣言’을 공포한다. 우리들은 바란다. 동일한 위기감, 책임감, 사명감을 가진 모든 중국의 공민들이 조야를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소이를 버리고 대동단결의 정신으로, 공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함께 중국사회의 위대한 변혁을 추진, 하루라도 빨리 자유, 민주, 헌정의 국가를 만들어, 중국인이 100년 이상 멈춤 없이 추구해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의 자기변명

(2009년 12월 23일 집필)

‘기소장’ (북경시 검찰원 제1분원 형사소송(2009년)247호)은 6편의 문장과 ‘零八宣言’을 열거, 그 가운데서부터 330문자 이상을 인용하여, 내가 ‘형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 ‘국가정권전복선동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추궁해야한다고 고발하고 있다.

‘기소장’에 열거되고 있는 사실은 내가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모은 후’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이 부정확한 것을 제외하면, 그 밖의 사실에 이의가 없다. 6편의 문장은 내가 쓴 것이며, 나는 ‘零八宣言’에 참가했다. 그러나 내가 받아모은 서명은 겨우 70명 전후로 300여명은 아니고, 다른 서명은 내가 수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근거로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발한다고 하면, 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자유를 잃은 1년여 사이, 예심경찰관, 검찰관, 재판관의 조사에 대해, 나는 일관하여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 지금, 나는 중국의 헌법이 정한 관련규정, 유엔의 국제인권규약, 나의 정치개혁에 대한 주장, 역사의 조류 등의 다방면으로부터 자기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항변한다.

1, 개혁개방이 가져온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중국인의 인권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각성되어, 민간에서의 권리옹호 운동이 끊이지 않고 높아지고 있으며, 인권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진보를 촉진한 것이다. 2004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개정, ‘국가는 인권을 존중, 보장 한다.’는 문장을 헌법에 삽입, 인권 보장을 법에 근거한 국가통치의 원칙으로 정했다. 이렇게, 국가가 존중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권이란, 즉 헌법 제35조가 정하고 있는 각 조항에 기록된 공민의 권리이며, 언론 자유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다. 나의 언론이 표명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는 중국의 공민이 헌법이 부여한 언론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제약이나 제멋대로의 박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존중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소장에 기록된 나에 대한 고발은 나의 중국공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중국의 근본인 헌법에도 위반되고 있으며, 언론을 죄로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것이며, 낡은 시대의 언론탄압이 현대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도의적인 비판과 헌법에 위반한데 대한 추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형법’ 제105조 제2항에도 위헌의 의심이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

회에서 그 합헌성을 심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2, ‘기소장’이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문장은, 내가 ‘유언비어나 비방 등에 의해 국가와 정권을 전복하려 선동했고, 사회주의제도를 타도하려했다’한 것이 죄라고 고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죄를 빙자한 것이다. ‘유언비어’란 허위 정보를 날조하거나 허구로 꾸미거나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이다. ‘비방’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과 인격을 중상하는 것이다. 양자는 어느 것이나 사실의 진위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이익에 관계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언론은 모두 비판적인 평론이며, 자기의 사상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가치판단이기는 하나 사실판단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의 언론과 유언비어나 비방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환언하면, 비평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반대의견은 어디까지나 비방이 아니다.

3, ‘기소장’은 ‘零八宣言’의 언론의 근거로 내가 집권당을 중상하고, ‘현 정권전복의 선동을 기도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 고발은 문장의 전후를 파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 일부분만을 취사했다는 의심이 있으며 ‘零八宣言’의 전체적인 의견표명을 전혀 무시한 것으로, 내가 모든 문장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관점을 무시하고 있다.

먼저, ‘零八宣言’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의 재앙’이 분명하게 현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사실이며, ‘반 우파투쟁’이 50만 명의 우파를 만들어 냈고, ‘대약진운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생명을 잃었으며, ‘문화대혁명’에서는 국가에 대 재해를 가져다 줬다. ‘64’는 살인사건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투옥되었다. 이들 사실은 어느 것이나 전 세계가 인정한 ‘인권의 재앙’으로, 틀림없이 중국의 발전에 위기를 겹쳐 시켜, ‘중화민족의 발전을 속박, 인류문명의 진보를 제약’했던 것이다. 일당 집권의 특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집권당에 대해서, 정치를 민중이 손에 되들려, 최종적으로는 ‘인민이 소유하고, 인민이 다스리고, 인민이 향유한다.’고 하는 자유국가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零八宣言’이 표명한 가치와 제기한 정치개혁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면, 그 장기적인 목표는 자유와 민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으로, 개혁을 위한 시책은 19항목이며, 그 개혁 입법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것이다. 현행 개혁이 기형적이고 병폐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기형적인 것으로부터 건전한 것으로, 즉 정치와 경제의 양자가 보조를 맞춰 균형을 취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의 입장에서

정부 당국에 대해 정치를 민중의 손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밑으로부터 민간의 압력에 의해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정치적 변혁을 촉구, 그것으로 관과 민이 서로 사이 좋게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헌정이라는 국민들의 1백년 이래의 소원을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려는 것이다.

특히 1989년부터 2009년까지의 20년간, 내가 주장해 왔던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관점은 일관되게 점진적, 평화적, 질서적, 그리고 제어 가능 한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성취하려고 하는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나도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폭력혁명은 지금도 여전히 반대다. 점진적 개혁에 대한 주장은, 나의 '사회를 변화시켜, 정권을 변화시킨다.' 고 하는 문장에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간에서의 권리의식의 각성, 민간에서의 권리옹호의 확대, 민간의 자주성의 향상, 민간사회의 발전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형성,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30년이 넘는 개혁의 실천이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 기축을 만들어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시책의 공포와 실시는 어느 것이나 그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개혁에 근거한 것으로, 민간에서의 개혁의 합의성과 영향력이 차차로 확대하여, 정부도 민간이 창출한 새로운 시도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점진적, 평화적, 질서적, 그리고 제어 가능하며, 아래로부터와 위로부터의 상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나의 주장의 키워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대가가 최소고 효과가 최대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적인 변혁의 기본이 되는 상식으로, 질서 있는 제어 가능한 사회변혁이 무질서하고 제어불가능 변혁보다도 반드시 우선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쁜 정부가 통치하는 질서도, 무정부상태의 대 혼란보다는 좋다. 그리고, 나는 독재적 혹은 독점적인 집권방법에 반대하며, '현 정권의 전복을 선동' 하는 것은 아니다. 환언하면, 반대가 전복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중국에는 '가득한 것은 손해를 가져오고, 겹쳐한 것은 이익을 가져 온다.' 는 오랜 교훈이 있으며, 서양에는 '오만은 신의 추궁을 받는다.' 는 잠언이 있다. 나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개한 언론이 완벽하고 완전할리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다. 특히 나의 시사평론의 문장은 논증이 엄밀하지 않을 수도, 감정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도, 편파적인 의견으로 전체를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있는 언론이라도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처벌의 근거가 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는 올바른 관점

을 발표할 권리뿐 아니라, 잘못된 언론을 발표할 권리 또한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언론과 다수의견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나, 올바르지 못한 언론과 소수의견도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치 않거나 반대이나,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다른 관점을 주장할 권리를, 예컨대 당신의 관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단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의 정수다. 이를 중국 고대의 24자의 잠언으로 정리하면 즉 '知無不言, 言無不盡. 言者無罪, 聞者足戒. 有則改之, 無則加勉.' 다. 이 24문자의 잠언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넓게 전해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 그 가운데서도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이 경계해야 한다.' 고 하는 것은 현대인이 비판적인 의견을 접할 때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으며, 더욱 권력자들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에 부딪칠 때 경고로 삼아야 할 자세다.

5, 나는 무죄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고발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 준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948년에 이미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인권선언' 의 기초에 참여했다. 50년 후인 1998년에는 중국정부는 또 국제사회를 향해 유엔이 정한 두 가지의 국제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의 A규약, B규약)에 서명하여 엄숙한 승낙을 행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각 국 정부에 대해, 더욱 존중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멤버로서도, 유엔이 정한 인권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스스로의 승낙을 실행할 책임이 있고, 유엔이 공포한 인권보장에 관한 조항을 모범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국제적인 인권사업을 촉진키 위해 공헌하여, 대국으로서의 문화적인 모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중국 정부가 완전히 스스로의 의무와 승낙을 이행하지 않고, 종이에 기록된 보증을 현실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헌법이 있더라도 헌정은 없고, 승낙은 있으나 실행은 없고, 여전히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을 받는 것이 일상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나에 대한 고발 자체가 특히 최신의 증거다. 분명히, 이러한 언론을 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중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회의 멤버라고 하는 입장과 모순으로, 중국의 정치적 이미지와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켜, 정치적으로 문명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6, 중국이든 세계든, 또 고대이든 근현대든, 언론을 죄로 다스리는 '문자의 감옥'은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대세의 추이와 시대조류에 모순 하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를 회고하면, 세습제가 행사되던 제정시대도, 秦부터 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언론 탄압이 왕성하게 행해져, 지금까지 일관하여 정권의 집권에서의 오점이 이어져, 중화민족의 치욕이기도 했다. 진의 始皇帝는 중국을 통일한 공적이 있으나, 그러나, '焚書坑儒'의 폭정은 후세에까지 악명을 떨치고 있다. 漢의 武帝는 걸출한 지력과 위대한 계략의 소유자였으나, 그러나 대사공이었던 史馬遷을 관형에 처했기 때문에 후세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청조시대에는 '康熙帝와 乾隆帝의 번영한 시대'였으나, 빈번이 행해진 문자의 獄은 악명을 남겼을 뿐이다. 그것과는 반대로, 漢의 文帝는 2000여년도 전에 언론을 죄로 다스리는 '誣謗罪'를 폐지했기 때문에, 인덕 군자라는 명성을 얻어 '文景之治'로서 역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대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약소 세력에서 차차 강대해져, 최후에는 국민당에게도 싸워 이겼으나, 근본적으로는 '독재에 반대, 자유를 획득한다.'고 하는 도의적인 힘이 원천이었다. 1949년 이전, 중국 공산당의 '신화일보'와 '해방일보'는 장개석 정권에 의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압제에 대해 빈번하게 글을 발표하여 비난, 언론의 죄에 몰린 유식자들을 위해 큰소리로 호통쳤다. 모택동 등의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도, 수 차례에 걸쳐 언론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반 우파투쟁에서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林昭가 총살형에 처해졌고, 張志新이 목장렸고, 언론의 자유는 모택동 시대에 소실, 국가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개혁이래, 집권당은 혼란을 진정시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에 대한 포용도도 대폭적으로 향상, 사회의 언론공간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언론 탄압도 대폭적으로 감소했으나, 그러나 언론을 죄로 몬다고 하는 전통이 완전하게 소멸된 것은 아니다. 1976년4월5일의 제1차 천안문사건에서 1989년6월4일 제2차 천안문사건에



이르기까지, 언론을 죄로 몬다고 하는 사건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내에게 이번에 죄를 묻게 하려는 것도 최근의 언론탄압에 지나지 않는다.

21세기 금일에 있어, 언론 자유는 이미 국민다수의 공통 인식이 되었으며, 언론 탄압은 많

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되고 있다. 객관적인 효과로 볼 때,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과같이, 감옥의 높은 벽은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들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 정권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억압하는 것으로 그의 합법성을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언론탄압에 의해 장기적인 안정을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필가의 문제는 문필가에 호소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고, 폭력으로 문필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인권의 재난을 불러올 뿐이다. 제도적으로 언론탄압을 근절함으로서 비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 확실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언론자유라고 하는 권리가 제도화된 현실적인 보장을 얻어야만 언론탄압은 중국의 대지로부터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을 죄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헌법에 확립되어 있는 인권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으며, 유엔이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배, 보편적인 도의성과 역사적 조류에도 모순 하는 것이다. 내가 자기를 위해 행한 무죄의 변명이 법정에서 알려져, 그것으로 본건의 재판이 중국의 법치 역사에서 선구의 의미를 가지고, 중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에 관한 조항과, 유엔 인권규약의 심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도의적인 추급과 역사적인 검증에도 대처하는 것이 될 것을 희망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적이 없다 - 나의 최후 진술

(2009년 12월 23일 집필)

이미 50여년을 경과한 나의 인생에서, 1989년6월은 나의 생명에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전, 나는 문혁 후에 부활한 대학입학시험에서 진학한 제1기의 대학생(1977년 입학)으로, 학사로부터 석사, 박사가 되어, 나의 연구생활은 순풍에 돛단 듯 했고, 졸업 후에는 모교인 북경사범대학에 남아 교수생활을 했다. 교단에 선 사람으로서, 나는 학생들로부터 대단히 환영받는 교사였다. 동시에 나는 한사람의 공공 지식인이기도 했으며, 1980년대에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문장이나 저작을 발표, 각지의 강연에도 자주 초대되어,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초청에 응해 객원연구원이 된 적도 있다. 나 자신에게 요구한 것은 사람으로서 혹은 문필가로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존엄 있게 생활하는 것이었다. 그 후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여 1989년의 민주화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나는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던 교직도 잃게 되고, 두 번 다시 국내에서 문장을 발표하거나 강연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발표, 평화적인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것밖에 없음에도, 한 사람의 교사가 그 직을 잃고, 한 사람의 작가가 문장을 발표할 권리를 잃고, 한사람의 공공지식인이 공공 장소에서 강연할 기회를 잃은 것은 나 개인으로서도, 개혁개방으로부터 이미 30년이 경과된 중국에 있어서도, 일종의 비애였다.

생각하면, 1989년6월4일의 천안문사건 이후, 나의 드라마틱한 경력은 생각지도 않게 그 모든 것이 법정과 관계되고 있다. 나는 두 번, 공중의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은 어느 것이나 북경시 법정에서이며, 한번은 1991년1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다. 두 번 모두 고발된 죄명은 다르나, 그 본질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어느 것이나 언론에 대한 죄로 몰린 것이다.

20년이 지났으나, 천안문사건에서 희생된 죄 없는 사람들의 혼은 아직도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있으며, 천안문사건에 의해 가슴깊이 강한 감정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던 나는 1991년 秦城감옥을 나온 뒤에는 자기의 조국에서 공공연히 발언할 기회를 잃고, 중국 본토 이외의 미디어를 통해 발언하는 것밖에 불가능했고, 또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감시되고, 자택에서의 감시(1995년5월-1996년1월)를 받은 외에, 노동교양(1996년10월-1999년10월)에 처해져, 지금은 또 정권의 적이 되어 피고석에 앉아있다. 그러나 나는 그

래도 나의 자유를 박탈한 이 정권에 대해서, 내가 20년 전에 발표한(6.28선언) 가운데 표명한 후 계속 견지하고 있는 '나에게는 적이 없다, 또 증오도 없다.'고 하는 신념을 여전히 말하고 싶다. 나를 감시하고, 체포하고, 심문한 모든 경찰관, 나를 기소한 검찰관, 나에게 판결을 내린 재판관도, 그 누구도 나의 적은 아니다. 나는 당신들에 의한 감시, 체포, 기소, 판결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현재 검찰 측을 대표하여 나를 기소하고 있는 검찰관인 張榮革과 潘雪晴 두 사람을 포함하여, 그 직업과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 12월3일의 두 사람의 나에 대한 취조 가운데, 나는 당신들로부터 존중과 성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증오는 사람들의 지혜와 양식을 부패 시키며, 구적의식은 민족의 정신을 타락시켜, 살 것인 가 죽을 것인 가하는 잔혹한 투쟁을 선동, 사회의 관용성이나 인간성을 파멸하여, 국가가 자유와 민주로 향하는 프로세스를 저해한다. 그에 더해, 나는 자기의 개인적인 경우를 초월하여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파악, 최대의 선의를 가지고 정권의 적의에 대응, 사랑으로 증오를 물리 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개혁개방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보는 한, 개혁개방은 모택동시대의 '계급투쟁을 강화한다.'고 하는 집권방침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일전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의 조화에 힘을 쏟았다. '투쟁철학'을 포기하는 과정도, 구적의식을 점차 희석시켜, 사람들을 증오 심리의 제거한다고 하는 과정이며, 인간성 가운데 침투한 흉악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더욱 이 과정이 개혁개방에 국내외의 풍부한 환경을 제공, 사람과 사람들 간에 사람을 회복시켜, 다른 이익이나 다른 가치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유연한 인간성에 걸 맞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국민의 창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성에 적합한 격려가 되었던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를, 국내적으로는 '계급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현재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시장화를 향하고, 문화가 다원화하고, 질서가 차차 법치로 진전되고 있음도, 모두 '구적의식'의 약화에 의한 것이다.

진보가 가장 완만한 정치영역에서도 구적의식의 약화는 사회의 다양화에 대한 정권의 관용성을 나날이 확대시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박해의 정도도 대폭적으로 감소, 1989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정도, '동란'에서 '정치적 풍파'로 바뀌었다. 구적의식의 약화는 정권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수입치 않을 수 없게 하였고, 1998년에는 중국정부는 유엔의 두 가지의 국제인권규약에의 서명을 세계에 약속하였으나, 이것은 중국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승인을 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2004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을 개정,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 한다.'고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헌법에 포함시켜, 이것은 인권이 이미 중국의 법치의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동시에, 현재의 정권은 ‘사람을 기본으로 한다.’, ‘조화사회를 창건 한다.’고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집권이념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면에서의 진보는 내가 체포된 후에 스스로 경험한 가운데서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자기가 무죄이며, 나에 대한 고발은 위헌이라고 어디까지나 믿고 있으나, 내가 자유를 잃고 나서 1년여 사이에, 전후하여 두 개의 구금 장소, 4명의 예심 경찰관, 3명의 검찰관, 2명의 재판관과 접촉하는 가운데,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시간 초과도 없고, 자백의 강요도 없었다. 그들의 태도는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그것도 늘 선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6월23일에, 내가 거주 감시 되고 있던 장소에서 북경시 공안국 제1 유치장으로 이송되어, 그것은 ‘北看’으로 약칭되는 장소였으나, 그 북간에서 지낸 반년 간에 규류의 관리가 진보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996년, 내가 과거 북간에서 지냈으나, 십 수년 전의 半步橋 때의 북간과 비교하면, 현재의 북간은 시설과 관리에 있어, 어느 것이나 아주 커다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북간이 처음 도입한 인간성에 기초한 관리는, 구류자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는 기본에서, 유연성이 있는 관리가 형무관들의 언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수행되고 있으며, 구치소 내의 ‘온화한 방송’이나 잡지 ‘悔悟’, 식사시간이 기상, 취침시간을 알리는 음악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법은 구류자에 존엄과 온화함을 감지시켜, 그들이 거방의 질서를 지키고, 그들에게 인간미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류자의 기소에 관한 환경이나 의식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나는 나를 주관하고 있던 거방의 劉崢형무관에 가까이 접촉하고 있었으나, 그가 구류자를 존중히 하려 기를 쓰고 있는 것은 관리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 그의 언동의 하나하나에도 나타나, 온화하게 느끼게 하였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선량한 이 형무관과 알고 지낸다는 것은 내가 북간에 있음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념과 스스로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나는 중국 정치의 진보가 정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 나는 미래의 자유스러운 중국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에 차 있으나, 그것은 어떤 힘이라도 자유롭게 동경하는 인간의 욕구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중국은 최종적으로는 인권을 지상으로 하는 법치국가로 변할 것이리라. 나는 그러한 진보가 이 사건의 심리에서도 나타날 것을 기대, 합의제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 - 역사의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내가 이 20년간에 가장 행복했던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아내 劉霞의

무한한 사랑을 얻은 것이다. 오늘날, 나의 아내가 법정에서 방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말해두고 싶다. 요컨대 아내여, 당신의 나에 대한 사랑이 지금까지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렇게 긴 세월, 나에게 자유가 없는 생활 속에, 우리들의 사랑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고생으로 점철되어 왔으나,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렇더라도 다하는 일이 없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감옥에서 형에 처해져 있는 동안,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기다려 주었다. 당신의 사랑은 높은 벽을 뛰어넘어 철창을 스며드는 양광이며, 나의 무릎까지 파고들어, 나의 세포의 하나 하나를 따뜻하게 스다듬고, 내가 시종 마음의 평화를 유지, 명량한 기분을 갖게 하고 있으며, 옥중에 있는 시간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나의 당신에 대한 사랑은 고뇌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너무도 고통을 수반한 것일 때도 있다. 내는 황야의 돌덩어리로, 세찬 풍우에 바래져,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을 꺼릴 만큼 차갑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강인하고, 예리하며,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가 있다. 예컨대 내가 산산히 부서지더라도, 나는 그 회진으로 당신을 껴안아 줄 것이리라.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내에게 가해지는 심판에 조용한 기분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자기의 선택을 후회함이 없이,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낙관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자기의 나라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거기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이 모두 동등하게 존중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가치, 사상, 신앙, 정치적 견해 ... 그것이 서로의 의견을 싸워가면서도 평화적으로 공존시킬 수 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어느 것이나 평등하게 보장되고, 특히 권력자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수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정치적 견해는 양광아래 분명해져, 민중으로부터의 선택을 받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 공포도 없이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이 가능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발표했기 때문에 정치적 박해를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자기가 중국에서 연면하게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의 최후의 피해자가 돼, 앞으로는 언론의 죄를 묻는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기본이며, 인간성의 근본이며, 진리의 어머니다.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인권을 말살하고, 인간성을 질식시키고, 진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헌법이 부여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의 공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모든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나, 예컨대 그 때문에 고발되었다고도 하더라도 한은 없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